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방법 변경 시 소요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14조제6항)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 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 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 추가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방법 변경 시 적용범위 확대(안 제14조제7항)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라.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에 따른 가산금 우대이율 배제 규정 신설(안 제30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날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제1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액은 제외한다)로서 최초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비적용 승인일 이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비율은 제1항의 비율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을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액환급률표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의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일 당시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우대이율 배제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 ⑤ (생 략)</p> <p>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신 설></p> <p>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p>	<p>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u>얻은 날 이후 관세등을 환급 받은 실적이 없을 때</u></p> <p>⑦ ----- ----- ----- ----- -----</p>

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30조(가산금액) ① (생략)

②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비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비율은 「은

-- 5년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가산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

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 설>

<신 설>

액의 이율은 제1항의 이율로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

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을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7